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5. 26.

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6.17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청소행정과장 이주현】

가. 제안이유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개방화장실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요건 완화
 - 법 제9조(개방화장실)에 따라 지정하는 개방화장실의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
- 법제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문장 정비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방화장실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요건 완화되어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(개방화장실의 지정 등)에 따라 지정하는 개방화장실의 규모를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하는 내용과 법제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는 것임.
- 검토의견으로는
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는 개정사항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공중화장실 관리를 청소행정과로 이관하여 관리함으로써 위생 및 청결 상태가 향상된 것은 잘된 점이라 판단됨. 아울러, 화장실 이용 수칙 안내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의식도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